사전채무조정제도 안내

(1) 사전채무조정제도란?

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.

(2) 지원 내용

구분	지원내용
상환기간 연장	채권의 종류·담보, 채무자의 총채무액·변제가능성·신용 등을 고려하여 상환
	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(무담보채권 및 부동산 외 담보채권은 최장 10년,
	부동산담보채권은 최장 20년)
분할상환	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조정 후 채무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음
이자율 조정	약정이율의 50%까지 인하 (최고이자율은 연 10%, 최저이자율은 5%, 약정
	이자율이 5% 미만인 대출은 그 이자율)
변제기 유예	채무자의 변제 가능성, 신용 등을 고려하여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범
	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
채무감면	연체이자에 한함 (원금, 이자, 비용은 감면 없음)

(3) 신청자격

신청일 현재 2개 이상의 협약가입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(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,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)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협약가입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하고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% 이하인 자

연간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30% 이상인 자

보유자산의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(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)

실업, 휴업, 폐업, 재산,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

(4) 신청방법

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. 인터넷 신청을 통한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.